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별표2와"를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또는 신고서"를 "신고서 또는 청구서"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제2항중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